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한 진단·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가실시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과보고서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안 제35조~제36조, 별지 제2호서식)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중요 평가항목 및 배점별 평가등급 규정

나. 결과보고서 평가의 실시(안 제37조)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배제, 사실 관계조사 및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 설치 규정

다.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조치(안 제38조)

평가기관이 실시한 결과보고서 평가등급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044-201-4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